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640호

「동물보호법」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를 위반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공 고 명 : 「동물보호법」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11. 10. ~ 2026. 11. 30.(20일간)
3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시송달내용

대상자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예정내용 (과태료)	미송달사유
김*배	서울특별시 강북구 4.**로1*길 *1	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2항 제1호 - 목줄 미착용 2차	300,000원	폐문부재

5. 유의사항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문의처 : **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경제과 (☎ 02-901-6464)**

2026. 11. 10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